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. 8. 25 선고 2021가단337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, 오민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25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, D(주민등록번호 2 생략)의 각 2/15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, D 사이에 2017. 6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,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김정태

별지